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 29 기 정기)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7 조에 근거하여 제 2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 29 기(2023.1.1~2023.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 당 배당금 61 원)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 2 조)

제 2-2 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 인, 사외이사 2 인) [첨부 2]

제 3-1 호 의안: 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2 호 의안: 권대열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3 호 의안: 조석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4 호 의안: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5 호 의안: 함춘승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함춘승, 2 년) [첨부 3]

제 5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 억원)

제 6 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첨부 4]

제 7 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첨부 5]

제 8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전사 대상 1인당 200 주, 총 730,400 주 부여)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1)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2)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제 29 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에 관한 공고문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3)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보내실 곳 (등기우편 또는 퀵서비스)

서울/경기권에서는 착불로 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령인을 카카오 IR 운영팀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에이동 9층, 카카오 IR 운영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29)

연락처: 02-6718-1082 / 010-2972-8845 / 010-7188-6600

송부: 카카오 IR 운영팀으로 주주총회 위임장 착불 퀵 송부 요청.

2024년 3월 11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

명의개서대리인 KB 국민은행장 이재근

[첨부 1] 정관변경의 안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 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중략) (신설) (신설) (신설) 34.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u>부동산개발 컨설팅업</u> (중략) 34. <u>음식점업 및 급식업</u> 35. <u>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가구, 가방, 의류, 잡화, 기타 각종 상품의 개발, 제작, 도소매 및 위탁판매업</u> 36. <u>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u> 37. <u>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u>	-카카오스페이스 합병에 따른 사업의 목적 변경 -카카오스페이스 합병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가 -카카오스페이스 합병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가 -카카오데이터센터 운영 및 부가사업 등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조항 번호 변경

(참고 1.) 카카오스페이스 합병에 관한 건

당사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 조직 통합을 통한 구심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스페이스가 영위하던 사업 일부인 '34. 음식업 및 급식업, 35.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가구, 가방, 의류, 잡화, 기타 각종 상품의 개발, 제작, 도소매 및 위탁판매업' 2건을 사업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30.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합병법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고 합병 이후에도 주식회사 카카오의 지분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합병 반대 의사 통지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합병승인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시된 일정에 따라 본 합병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 합병기일은 2024년 5월 1일이며,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는 2024년 5월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2024년 2월 7일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1081>)

(참고 2.) 카카오 제1데이터센터 준공 및 운영에 관한 건

당사는 2021년 3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체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클라우드 및 AI 관련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자체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의 첫번째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지난 2023년 9월 준공되었으며, 2024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한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을 사업의 목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예상금액은 4,249 억원으로, 이는 데이터센터의 건축비용뿐 아니라 준공 이후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2029년까지 예정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비투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해당 데이터센터 투자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2021년 3월 12일 당사가 제출한 '신규 시설투자등' 공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2801340>).

제 2-2 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부칙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첨부 2] 이사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신아	1975-02-2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권대열	1968-02-29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조석영	1971-03-17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차경진	1983-09-1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함춘승	1964-01-1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고 1: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CA 협의체 공동의장(경영채신위원장)입니다.

참고 2: 정신아 사내이사 후보자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카카오의 기타비상무이사, (주)카카오벤처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상기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해당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의 특수관계를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28일에 (주)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참고 3: 권대열 사내이사 후보자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카카오모빌리티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상기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해당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의 특수관계를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28일 (주)카카오뱅크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법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참고 4: 조석영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주)카카오헬스케어의 감사직을 유지할 예정이며, 상기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겸직에 있는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의 특수관계를 제외하였습니다.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	<학력사항> 1997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경영학과 학사 200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석사 2006년 미시간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 MBA <경력사항> 2000년 ~ 2007년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2007년 ~ 2009년 eBay APAC HQ 전략매니저 2010년 ~ 2013년 네이버(주)(구, 엔에이치엔(주)) 수석부장 2014년 ~ 2018년 (주)카카오벤처스 상무, 파트너 2018년 ~ 현재 (주)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2023년 ~ 현재 (주)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 2023년 ~ 현재 (주)카카오 채신TF장 2024년 ~ 현재 CA협의체 전략위원장 2024년 ~ 현재 CA협의체 공동의장	
권대열	CA 협의체 ESG 위원장	<학력사항> 199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2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 석사 <경력사항> 1995년 ~ 2018년 (주)조선일보 2018년 ~ 2019년 (주)카카오 커뮤니케이션 실장 2019년 ~ 2020년 (주)카카오 ER실장 2020년 ~ 2022년 (주)카카오 CRO 2022년 ~ 2023년 (주)카카오 CDR랩장 2023년 ~ 현재 (주)카카오 ERM위원장 2023년 ~ 현재 CA협의체 ESG위원장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조석영	CA 협의체 그룹준법경영실 실장	<학력사항> 1998년 2007년 2013년 <경력사항> 2007년 ~ 2009년 2009년 ~ 2010년 2010년 ~ 2011년 2011년 ~ 2014년 2014년 ~ 2014년 2014년 ~ 2016년 2016년 ~ 2019년 2019년 ~ 2019년 2019년 ~ 2020년 2020년 ~ 2020년 2020년 ~ 2021년 2021년 ~ 2021년 2021년 ~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지식재산권)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UNODC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감사원 방산비리조사단 수사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디엔에이분석과) 과장(부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주)카카오 ERM실 실장 CA협의체 그룹준법경영실장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시스템전공교수, 한양대학교 비즈니스인포메틱스학과 학과장	<학력사항> 2006년 2011년 <경력사항> 2019년 ~ 현재 2019년 ~ 현재 2019년 ~ 현재 2019년 ~ 현재 2023년 ~ 현재 2024년 ~ 현재 <수상이력> 2023년	테크메니아주립대학교 정보시스템 학사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영정보시스템 박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시스템전공교수, 한양대학교 비즈니스인포메틱스학과 학과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스마트 미래교통 빅데이터 자문위원 경기도청 빅데이터 자문위원 경찰청 데이터기반 행정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정책자문위원 데이터산업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상 수상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주) 사장	<학력사항> 1986년 <경력사항> 1999년 ~ 2000년 2000년 ~ 2004년 2004년 ~ 2013년 2013년 ~ 현재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경제정치학 학사 아이엔지 베어링증권(주) 서울지점 전무이사(주식총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전무이사(주식총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피에이치앤컴퍼니(주) 사장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신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권대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석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차경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함춘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함춘승	1964-01-1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주) 사장	<학력사항> 1986년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경제정치학 학사
		<경력사항> 1999년 ~ 2000년 2000년 ~ 2004년 2004년 ~ 2013년 2013년 ~ 현재	아이엔지 베어링증권(주) 서울지점 전무이사(주식총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전무이사(주식총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피에이치앤컴퍼니(주) 사장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함춘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4] 자기주식 소각의 건

1. 자본감소의 방법

소각방법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액면가액	100 원 (1 주당 액면가액)
소각대상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액면 가액 : 100 원 (1 주당 액면가액) 소각 대상 : 주식회사 카카오와 구) 주식회사 카카오엠의 합병 시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엠 주식 일부에 배정된 합병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등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2. 자본감소 일정

구분	관련일정	비고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3월 28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4년 3월 29일 ~ 2024년 5월 2일	-
효력발생일	2024년 5월 3일	-
변경상장 예정일	2024년 5월 20일	-

3. 자본감소 대상 주식

(단위: 주, %, 원)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효력발생일	감자전 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 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1,966,496 주	0.44 %	2024년 5월 3일	44,565,335,000 (445,153,350)	44,368,685,400 (443,186,854)

[첨부 5]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p>	<p>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p>	<p>- 본 규정의 대상을 등기이사 및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영계약직 임원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규정명 변경</p>
<p>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28 조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주)카카오(이하 "회사"라고 한다) 정관 제 28 조에 따른 <u>등기이사 및 회사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임원</u>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영계약직 임원을 지급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목적 내용 변경</p>
<p>제 2 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등기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u>비상근 이사</u>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u>이사</u>로 한다. 4. 전항의 "계속재임기간"은 <u>이사</u>로 선임된 때부터 퇴임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u>이사</u>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계속재임기간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p>	<p>제 2 조 (지급대상) 1.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u>등기이사 및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영계약직 임원</u> (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u>대상자 및 별도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대상자</u>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계속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u>대상자</u>로 한다. 4. 전항의 "계속재임기간"은 <u>대상자</u>로 선임된 때부터 퇴임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5. <u>대상자</u>가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계속재임기간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u>위임받은 업무를 종료 (퇴임 및 사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u></p>	<p>-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영계약직 임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 용어 변경 (이사 → 대상자) - 별도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추가</p>
<p>제 3 조 (지급사유) <u>이사</u>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임</p>	<p>제 3 조 (지급사유) <u>대상자</u>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u>사망으로 인한 퇴임</u> 4. 기타 사유로 인한 퇴임</p>	<p>- 단순 수정 및 용어 변경 (이사 → 대상자)</p>

<p>(기존 제 4 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은 제 5 조로 조문 이동)</p>	<p>제 4 조 (퇴직급여 제도) 회사는 본 규정 적용 대상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다.</p>	<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라 조항 신설</p>												
<p>제 4 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 퇴직금은 계속재임기간 1 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 일분을 퇴직금으로 정하며, 1 년을 초과하는 1 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2. 평균임금은 퇴임일 이전 3 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에 [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을 직책 별 재임기간에 따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4.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와 지급대상 이사의 합의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표 1] 퇴직금 지급률</p> <table border="1" data-bbox="105 1243 627 1440"> <thead> <tr> <th>직책</th> <th>지급률</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td> <td>3 배수</td> </tr> <tr> <td>대표이사 외</td> <td>1 배수</td> </tr> </tbody> </table>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 배수	대표이사 외	1 배수	<p>제 5 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사부담금 수준) 1. 회사는 대상자의 퇴직금으로 매년 말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부담금으로 각 대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43 477 1169 674"> <thead> <tr> <th>직책</th> <th>회사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td> <td>연간 보수총액 X 1/12 X 3 배수</td> </tr> <tr> <td>대표이사 외</td> <td>연간 보수총액 X 1/12 X 1 배수</td> </tr> </tbody> </table> <p>- 2. 제 1 항에 따른 '연간 보수총액'이라 함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각종 수당 등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연간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기타 특별 상여 ②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 복리후생비 ③ 기타 연간 보수총액 산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항목 3. 회사는 대상자가 성과급의 퇴직연금적립을 신청한 경우 성과급(이연 성과급 중 당해연도 지급분을 포함한다)의 30%를 회사 부담금으로 각 대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p>	직책	회사부담금	대표이사	연간 보수총액 X 1/12 X 3 배수	대표이사 외	연간 보수총액 X 1/12 X 1 배수	<p>- 조항 번호 변경 - 제 4 조 조문 신설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사부담금 수준 구체화</p>
직책	지급률													
대표이사	3 배수													
대표이사 외	1 배수													
직책	회사부담금													
대표이사	연간 보수총액 X 1/12 X 3 배수													
대표이사 외	연간 보수총액 X 1/12 X 1 배수													
<p>제 5 조 (특별공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가 퇴임한 때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 4 조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6 조 (특별위로금 지급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등기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그 대상자가 경영계약직 임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의해 퇴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임기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회사 사정으로 퇴임하는 자 3. 기타 특별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별도 위원회 결의에서 의결된 자</p>	<p>- 조항 번호 변경 - 퇴직금 이외에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지급 사유 구체화 및 대상자별 의사결정 주체 명확화</p>												

<p>제 6 조(지급제한)</p> <p>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u>회사는</u> 이사회회의 결의로 해당 <u>이사</u>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① 이사가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p> <p>② 재임 중에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p> <p>③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p> <p>2. 회사는 <u>이사</u>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 또는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u>이사</u>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p>	<p>제 7 조 (지급제한)</p> <p>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u>그 대상자가</u> <u>등기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대상자가</u> <u>경영계약직 임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u> <u>의해 해당 대상자에</u>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① <u>등기이사</u>가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p> <p>② <u>경영계약직 임원이 위촉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u> <u>해당하여 퇴임한 경우</u></p> <p>③ 재임 중에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p> <p>④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p> <p>2. 회사는 <u>대상자</u>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 또는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u>대상자</u>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번호 변경 - 단순 수정 및 용어 변경 (이사 → 대상자) - 지급제한에 대한 대상자별 의사결정 주체 명확화 -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영계약직 임원이 본 규정의 지급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지급제한 사유 추가
<p>제 7 조 (규정의 개폐 및 개정)</p> <p>본 규정의 개폐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p>	<p>제 8 조 (규정의 개폐 및 개정)</p> <p>본 규정의 개폐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번호 변경
<p>제 8 조 (기타)</p> <p>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u>별도로 정하는</u> <u>바에 의하며</u>,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p>제 9 조 (기타)</p> <p>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u>중 적용이 필요한</u> <u>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u> <u>퇴직연금제도 규약의 내용 중 일부 및 근로자에게</u> <u>적용되는 관계 법령 내용의 일부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u> <u>있으며</u>, 본 규정과 회사의 타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u>본</u> <u>규정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는</u>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번호 변경 - 관계 법령 명시
<p>[부칙]</p> <p>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u>제 4 조 2. 및 [표 1]의 대표이사 지급률에 관한 부분은</u> <u>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선임되는 대표이사부터</u> <u>적용하며,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u> <u>지급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현재 재임 중인</u> <u>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u> <u>규정에 따른다.</u></p>	<p>[부칙]</p> <p>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 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u>적용되기 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변경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경과 조치 부칙 세부 조항 변경

위임장

본인은 2024년 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 29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서 _____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주주번호 : _____
- 소유주식수 : _____ 주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_____ 주
- 위임할 주식수 : _____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 29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61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2조)		
		2-2.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3-2 권대열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3-3 조석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3-4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5 함춘승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함춘승, 2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억원)			
제6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7호 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제8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6. 기타 사항(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등)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 주 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4년 _____ 월 _____ 일 시

※ 찬성, 반대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으며, 위임 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 유효합니다.